

관리시설설치·운영기관의 지정기준(제2조제3항 관련)

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

1. 소각시설

- 가.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
- 나.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
- 다. 일반기계기사 1명
- 라. 시공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명(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마.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을 1년 이상 운전한 사람 1명과 천정크레인 외의 운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명(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2. 매립시설

- 가.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
- 나.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1명
- 다. 토목기사 1명
- 라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명
 - 1) 33,000제곱미터 이상의 생활폐기물의 매립시설
 - 2) 33,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시설(지정폐기물의 매립시설의 경우는 9,900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)

3. 재활용시설

- 가. 폐기물처리기사 1명
- 나. 수질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
- 다. 기계정비산업기사 1명
- 라.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재활용시설(설치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과 같은 종류의 재활용시설만 해당한다)의 시공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명(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마.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재활용시설(운영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과 같은 종류의 재활용시설만 해당한다)의 운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명(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비고: 각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각 호 라목 또는 마목의 경력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라목 또는 마목 분야의 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.